SPS-S DVCC 0001-7436

SPSSPSPS
SPSPSPS
SPSPSP
SPSPS
SPSP
SPS

SPS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SPS-S DVCC 0001-7436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2021년 8월 25일 제정

심 의 :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원장)	정 종 인	(주)에스아이미디어그룹	대 표 이 사
(위 원)	박 공 서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이 사 장
	조 병 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 수
	한 동 민	(주)레이웍스	대 표 이 사
	정 흥 재	스크린라이트(주)	대 표 이 사
	문 연 국	전자부품연구원	공 학 박 사
	박 재 일	한국표준협회	서비스KS 전문위원
	김 효 정	국가기술표준원	서비스KS 자문위원
(간 사)	서 진 성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이 사

원안작성협력: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단체표준기술전문위원회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원장)	류 일 선	한국표준협회	전 문 위 원
(위 원)			
(간 사)	김 영 구	케이와이케이㈜	대 표

표준열람 :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제 정 자 :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
제 정 : 2021년 8월 25일
심 의 :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원안작성협력 :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단체표준기술전문위원회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02-556-0301)으로 연락 주십시요.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 요량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단체표준 심의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목 차

머 리 말 ii
개 요 iii
1 적용범위 1
2 인용표준 1
3 용어와 정의 1
4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 3
4.1 일반사항 3
4.2 상담 3
4.3 제안서 작성 4
4.4 계약 4
4.5 기획 5
4.6 제작 6
4.7 편집 7
4.8 영상 콘텐츠의 품질 8
4.9 저작권 보호 8
4.10시사(검수)단계 9
4.11납품 9
4.12사후관리 9
5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기반구조 9
5.1 경영 9
5.2 조직의 구성과 운영 9
5.3 인력의 확보와 교육 훈련 9
5.4 시설·장비 확보와 유지 11
5.5 제3자 위탁 11
6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시스템 12
6.1 안전관리 시스템 12
6.2 환경관리 시스템 12
6.3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 12
6.4 품질관리 시스템 13
6.5 고객의 소리와 불만 처리 시스템 13
부속서 A (참고)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 점검표 15
부속서 B (참고) 영상 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 18
부속서 C (참고) 영상 콘텐츠 품질평가 점검표 19
부속서 D (참고) 위탁업체 평가 점검표 20
SPS-S DVCC-****:2021 해설 23

머 리 말

이 표준은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에서 원안을 갖추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라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된 단체표준이다.

이 표준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이사장 및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 요

이 표준은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이 작성한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단체표준이다.

이 표준의 제정 취지는 UHD 이상으로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영상 콘텐츠의 품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
—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기반구조에 대한 규정
—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규정

또한 SPS-S DVCC 0001-7436 에는 다음 부속서가 있다.

부속서A (참고)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 점검표
부속서B (참고) 영상 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
부속서C (참고) 영상 콘텐츠 품질평가 점검표
부속서D (참고) 위탁업체 평가 점검표

이 표준은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 요구 사항에서 제공한 어떠한 권한 또는 의무도 변경할 의도가 없다.

단체표준

SPS-S DVCC 0001-7436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Visual contents production service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UHD 이상으로 제작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홍보, 마케팅 및 광고용 영상 콘텐츠의 제작 서비스에 요구되는 **프로세스, 기반구조 및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IEC 60268-**4** 음향 시스템 기기 ─ 제4부: 마이크로폰
KS Q ISO 10002, 품질경영 — 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 처리에 대한 지침
KS Q ISO 10015, 품질경영 — 교육훈련지침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초고화질(ultra high definition)
UHD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승인한 고화질 디지털 비디오 포맷으로서 화면비율 16:9, 화소수 8 294 400, 가로・세로 해상도 3 840×2 160에 해당하는 품질의 규격에 해당하는 품질의 영상

비고 UHD의 화질은 1 920×1 080 해상도의 풀(full)HD 보다 4배 선명하다. UHD를 4K라고 하기도 한다.

3.2
해상도(resolution)
1인치 당 들어가 있는 화소 수 또는 화면 전체의 화소 수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단위

3.3
영상 콘텐츠(visual contents)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 종 영상 정보나 **그 내용물로**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영상,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의 총칭

3.4
시나리오(scenario)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일종의 각본으로 장면이나 그 순서,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 따위를 상세하게 표현한 것

3.5
콘티(continuity)
영상물 촬영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것

3.6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
CG
컴퓨터를 활용하여 입체를 포함한 도형, 화상 등을 처리 또는 제작하는 방법

3.7
편집(editing)
촬영된 영상을 의도에 맞게 **숏(shot), 신(scene) 및 시퀀스(sequence)**를 결합하면서 영상물을 완성하는 작업

3.8
내레이션(narration)
영상 등에서 사건을 묘사하거나 줄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영상 속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이 아닌 화면 밖에서 목소리만으로 구사되는 해설

3.9
시사(preview)
영상 콘텐츠의 최종 결과물이 제작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구현됐는지 검토하는 것

비고 영상 콘텐츠 제작 전에 제작 관련 세부 사항까지 충분히 논의하게 되지만 촬영과 편집, 녹음 결과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따라서 시사는 제작의 최종 결과물을 확인해 제작 의도가 제대로 구현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시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3.10
경계 흐림(edge blurring)
서로 다른 휘도를 나타내는 두 영역의 경계부가 매우 선명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현상

3.11
선 퍼짐(line spreading)
패턴이 움직이는 동안 경계 흐림 현상으로 선 가장자리의 명암 비가 저하되는 현상

3.12
색 이상(color aberration)
흐린 영역에서 원하지 않는 색상이 나타나는 현상

3.13
플리커(flicker)
화면의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여 떨리는 현상

3.14
신호 대 잡음 비(signal to noise ratio)
S/N비
저조도 환경에서 카메라 신호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를 표시하는 지표

3.15
동적범위(dynamic range)
음향이나 빛과 같은 신호에서 변동이 가능한 크기에 대한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

비고 최소 수용이 가능한 값은 주로 사용 환경 잡음이나 계측기의 분해능 따위에 의해 결정된다.

3.16
레지스트레이션(registration)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거나 위치를 맞추는 것

비고 특히 동일한 피사체를 서로 다른 파장대로 촬영한 멀티 스펙트럼 화상, 시간차가 있는 화상 등 복수의 디지털 화상을 취급하는 경우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맞추는 것을 가리킨다.

3.17
제작자(producer)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

3.18
기획자(project manager)
PM
제작자의 피고용인이거나 대리인으로서 고객에게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종사자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3.19
종사자(worker)
제작자의 피고용인이거나 대리인으로서 고객에게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

4.1 일반사항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제안, 계약, 기획, 제작, 편집, 시사(검수), **납품, 사후관리** 등의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계획, 실행 및 관리해야 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점검표는 **부속서 A**를 참고한다.

4.2 상담

제작자는 전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고객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상담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범위. 비용, 일정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야 한다.
b)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상담해야 한다.
c) 고객의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d)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전 단계에 걸쳐 고객의 요구 사항과 기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e) 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의도한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과 명확하게 의사소통해야 한다.
f) 상담내용을 고객이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g) 상담 결과를 문서화(상담일지 등)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h) 기타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상담에 대응해야 한다.

제작자는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4.3 제안서 작성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의 전 단계에 걸쳐 고객의 요구 사항과 기대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 제작 방향
b) **제작기간과 비용**
c) 영상 콘텐츠의 **구성과 내용**
d) 참여 전문가의 **이력과 경력 사항**, 시설 및 장비
e) 제3자 위탁 내용(**인력과 장비** 포함)
f) 영상 콘텐츠에 대한 품질보증 방법
g) 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초상권 보호 관련 사항 등

비고 제안서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창작성, 제작 대상을 보는 관점, 고객 및 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4 계약

제작자는 **4.3** 제안서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범위, 내용, 기간, 금액 등 고객과 협의한 내용을 명기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 계약서는 **부속서 B**를 참고한다. 또한 계약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상세 계약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

a) 계약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b) 계약 명칭
c) 영상 콘텐츠의 제작 범위와 내용
d) 계약 기간
e) 계약금액, 계약보증금(지급일 포함), 지체상금 비율(또는 지체상금)
f) 계약일자
g) 계약 당사자 서명 날인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별도의 이행 사항(상세 계약서 등)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

다.

h) 계약당사자 의무
i) 지적재산 소유권
j)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범위
k)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고지, 합의, 청구에 대한 방법
l) 계약해지에 따른 적정 위약금
m) 정보, 비밀사항에 대한 보안방법
n) 분쟁의 해결방법, 피해보상 책임과 범위
o) 기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작자와 고객 간의 합의사항 등

비고 계약서에는 기업신용 평가서,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실적 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이다.

4.5 기획

4.5.1 일반사항

일반적으로 기획의 첫 단계는 스텝 구성으로 시작된다. 제작자는 고객이 요구하는 영상 콘텐츠를 연출할 수 있는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출자(또는 총감독)로 선정하고, 연출자의 의도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 작가를 선정해야 한다.

제작자는 기획회의, 시나리오 작성, 콘티작업, 스텝구성, 출연자, 장소섭외(세트제작 포함) 등의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고객에게 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2 기획회의

기획회의는 영상 콘텐츠 제작의 기초단계로서 상담과 계약 단계에서 파악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목적, 의도 및 제작 내용에 중점을 두고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a) 제작방향
b) 제작계획과 제작비 산출
c) 시나리오 구성(안) 등

4.5.3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 구성(안)을 토대로 전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기획자와 연출자의 검토를 받는다. 제작자는 완성된 시나리오 내용이 고객의 의도와 방향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촬영에 필요한 장소(스튜디오, **세트장, 야외장소** 등)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세트의 디자인과 제작을 의뢰한다.

4.5.4 콘티 작업

콘티 작업은 영상 콘텐츠 제작에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 작업한다.

a) 장소와 세트 제작에 따라 콘티를 작성한다.

b) 콘티에는 장면번호, 화면크기, 촬영 각도, 위치, 의상, 분장, 소품, 대사, 액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c) 완성된 콘티는 총감독과 카메라 감독이 협의하여 제작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 할 수 있다.

제작자는 완성된 콘티를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고 고객의 요구, 제작 의도에 따라 시나리오에 직접 콘티작업을 할 수도 있다.

4.5.5 스텝구성

연출자(총감독), 시나리오 작가,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등 전문인력은 기획회의에서 선정하고 컴퓨터 그래픽, 음악감독, 특수 카메라, 드론 촬영 등 기타 스텝은 시나리오 작성이 완료된 후에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작자는 구성된 스텝진이 고객이 요구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충분한 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스텝 구성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보고해야 한다

4.5.6 출연자, 장소 섭외 및 세트제작

고객이 출연자를 지정하여 제작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제작자가 고객에게 추천할 수도 있다. 제작자는 출연자가 확정되면 고객에게 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제작

4.6.1 일반사항

촬영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의 제작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공간과 인물을 카메라에 담는 작업이다.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는 **5.4.2**에 따른다.

4.6.2 촬영장비 목록 점검

촬영감독은 영상 콘텐츠의 제작에 적합한 촬영장비 목록을 작성하고 촬영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촬영장비는 제작 의도와 제작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촬영장비 이외에 다음 장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a) 특수 카메라, 렌즈
b) 오디오 장비(동시녹음 등)
c) 특수 조명
d) 지미집(jimmy jib), 촬영용 드론 등

4.6.3 촬영스텝 구성

촬영감독은 제작 의도 및 제작 형태 등에 적합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촬영스텝을 구성하고, 촬영스텝이 영상 콘텐츠 제작 의도와 방향 및 촬영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교육해야 한다.

제작자는 촬영스텝 개개인과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촬영단계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촬영스텝 개개인과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4.6.4 촬영

촬영감독은 전적으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촬영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촬영 신(scene) 별로 촬영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비고 촬영기록에는 촬영일자, 촬영장소, 출연자, 촬영장비, 소품, 의상, 헤어, 메이크업, 음악, 특수효과, 대역(stunts) 등 편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촬영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촬영 본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촬영 내용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5 초상권 보호

촬영감독은 출연자와 촬영스텝, 의도하지 않게 촬영된 특정인 등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다.

비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식별 가능성
— 사업외적 목적으로의 무단 사용
— 계약 범위를 넘는 사용 등

4.6.6 안전・보건 관리

촬영감독은 출연자, 촬영스텝 등 촬영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야외촬영(고공낙하, 절벽, 빙벽, 수중 등 포함), 지미집, 24시간 촬영 등 안전・보건 위험 요소가 높은 경우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휴게시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비고 드론 촬영 시에서는 드론 비행을 위한 항공 법령(항공안전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다. 제작자는 안전사고 및 재산의 손・망실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7 편집

4.7.1 일반사항

편집단계는 가편집, 컴퓨터 그래픽 작업, 1차 완성 본 편집, 내레이션작업, 특수효과작업, 음악작업 등의 단계를 거쳐 종합편집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7.2 가편집

가편집은 **4.6**에서 완성된 촬영 원본에 기존의 영상 자료를 편집하는 단계로 촬영일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편집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작자는 가 편집된 내용을 고객에게 시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3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로 도형을 임의로 그리거나 3차원 물체의 표현 또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지의 형

상이나 상상 세계를 표현하는 컴퓨터 그래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단계에서 의뢰해야 한다. 컴퓨터 그래픽의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시나리오가 완성된 후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7.4 영상 후반 작업

영상 후반 작업은 영상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작업으로 가편집 본, 컴퓨터 그래픽, 자막작업 등을 통하여 1차 완성 본을 편집한다. 필요한 경우 1차 완성 본에 내레이션, 특수효과를 추가하여 편집한다.

4.7.5 음악작업

영상의 의도와 목적을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영상의 의미를 각인시킬 수 있는 내레이션(성우, 아나운서 등)과 다양한 사운드를 선택하여 편집한다.

4.7.6 종합편집

1차 완성된 영상 본, 내레이션, 배경음악 녹음 본으로 믹싱 작업을 하여 종합편집 본을 완성한다. 제작자는 종합편집 본으로 고객에게 시사를 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편집을 완료한다.

제작자는 영상 후반 작업이 완료되면 고객에게 완성된 영상 본을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4.8 영상 콘텐츠의 품질

제작자는 편집이 완료된 종합편집 본에 대하여 상영시간, 화면 비율, 해상도, 영상, 음질 등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영상 콘텐츠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영상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르되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고객 요구 시간의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화면 비율(종횡비)은 16:9이어야 한다.
c) 해상도는 가로・세로 해상도가 3 840 × 2 160 이상이어야 한다.
d) 영상은 경계 흐림, 선 퍼짐, 색 이상, 플리커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e) 음질은 음이 끊어지거나 청취에 거북할 정도의 잡음 또는 소음이 없어야 한다.

영상 콘텐츠의 품질평가를 위한 점검표는 **부속서C**를 **참고한다**.

비고 화면 비율과 해상도는 TTAK.KO-07.0082[1]를 참고한다.

4.9 저작권 보호

제작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이 표준은 스튜디오 내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UHDTV 장비들 간의 연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디지털 영상 신호 표현 방법을 규정한다. 표준에서는 16:9의 종횡비에 해당하는 UHDTV 영상 신호의 광전 변환, 화면 특성, 신호 포맷 및 디지털 표현에 관한 변수들에 대하여 정의한다.

4.10 시사(검수)

제작자는 완성된 종합편집 본으로 고객에게 시사하고 검수 받아야 한다. 검수 받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품질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4.11 납품

제작자는 완성된 영상 콘텐츠를 고객이 지정한 방식의 포맷과 형식에 따라 납품해야 한다. 고객이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 영상 콘텐츠 원본과 편집본, 기타 부수영상 등을 저장한 **외장하드, USB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4.12 사후관리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납품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계약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영상 콘텐츠의 내용 수정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5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기반구조

5.1 경영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5.2, 5.3 및 5.4**를 만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다음의 경영기반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a) 고객중심의 경영원칙과 경영철학을 갖추어야 한다.
b)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경영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c)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에 관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d)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 재무건전성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 또는 신용정보기관의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2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a) 조직에는 기획관리**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b) 제작자는 조직별, 개인별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분담에는 **조직별, 개인별 업무수행 범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유지돼야 한다.
c) 6.4.1의 품질방침은 조직 내에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5.3 인력의 확보와 교육 훈련

5.3.1 인력과 전문성 확보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별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인력은 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 컴퓨터 그래픽, 품질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인이 세 가지 이상의 영역을 초과하여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서비스 종사자와 기획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

a)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프로세스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
b)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c) 발생 가능한 안전에 대한 대처 능력
d)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관련 법령
e) 계약 관련 지식 등

전문인력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5.3.2 교육훈련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4절**의 프로세스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비고 교육훈련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KS Q ISO 10015를 **참조한다**.

5.3.2.1 교육훈련의 계획과 실행

a) 서비스 종사자와 기획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단위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b) 서비스 종사자와 기획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무교육, **보수교육, 재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c) 교육훈련 관련 기록은 최소한 3년 동안 유지・보관해야 한다.

비고 교육훈련 관련 실시 기록은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교육일지, 설문서, 설문 집계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3.2.2 교육훈련 내용

제작자는 서비스 종사자와 기획자의 직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있다.

a)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
b)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관련 법
c) 각종 계약 관련 내용
d)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안전 관련 지식, 안전장비의 사용법, **응급처치 등**
e)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성추행 등 관련 법
f) 기타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내용 등

제3자에게 프로세스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지원받는 인력에 대해서도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위탁하는 프로세스의 업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5.3.2.3 교육훈련 평가와 활용

제작자는 교육훈련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평가·관리해야 하며, 교육훈련 평가 결과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은 차기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교육훈련 실시 후 관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4 시설 · 장비 확보와 유지

5.4.1 일반사항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 제작, 편집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는 임대할 수 있으나 배타적 권리가 확보돼야 한다. 임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4.2 시설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

a) 제안, 상담, 기획,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사무실
b) 촬영 등에 필요한 전용 공간(스튜디오, 촬영 세트, 필요한 경우 야외촬영 장소) 등
c) 편집에 필요한 전용 공간(컴퓨터 그래픽, 영상편집, 음향편집 등)과 편집을 위한 시설은 UHD 이상의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d) 기타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등

5.4.3 장비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 편집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

장비는 UHD 이상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장비의 성능 기준은 KS C IEC 60268-4 또는 장비 제작사의 품질기준(또는 고객이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한다. 카메라는 신호 대 잡음 비, 동적범위, 레지스트레이션 등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5.5 제3자 위탁

제작자는 **4절**의 프로세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탁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다만 상담, 계약, 기획, 품질관리, 시사, 납품, 사후관리 등의 프로세스는 제작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a)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관계를 수립하며, 제공받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예 : 위탁업체 관리규정 등)
b)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위탁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해야 한다. 선정과 평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수립돼야 하며, 평가의 결과와 평가에 부수되는 자료 등은 관리돼야 한다. 위탁업체 평가에 대한 사항은 **부속서 D**를 **참고한다**.
c) 위탁 내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이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사항을 위탁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위탁업체가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d)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관련 법적 요구 사항과 고객의 요구 사항 충족에 대한 중요성을 위탁업체와 의사소통해야 한다.
e) 위탁계약서, 위탁업체 평가, 위탁 분야 결과물 등에 대한 기록은 최소한 3년 동안 유지 · 보관해야 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위탁업체의 서비스 수행결과도 포함된다. 다만, 위탁업체의 선정이 제작자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기 고객이 직접 위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제3자 위탁업무 내용은 **4.2**의 상담 프로세스에서 고객에게 설명돼야 하며 계약서 등에 명시돼야 한다. 제3자 위탁업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 고객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시스템

6.1 안전관리 시스템

제작자는 고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a)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고객 및 종사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 위해, 재난 등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와 응급조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b)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대피, 구조, 피난 등의 방법을 계획하고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c) 화재, 지진 등 재난, 재해 발생으로부터 고객의 안전과 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구급차, 소방차 등의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제작자는 고객과 종사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 등의 처리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손해·상해 보험 등에 적절한 수준으로 가입해야 한다.

6.2 환경관리 시스템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a) 발생될 수 있는 환경 위해 요소(폐기물, 소음, 대기, 폐수 기타 오염물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b) 환경 위해 요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6.3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습득한 고객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a)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노출되는 고객 정보의 유출이나 악용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
b)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하며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c) 필요한 경우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한 문서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 : 정보보호 서약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6.4 품질관리 시스템

6.4.1 품질방침 수립

제작자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품질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유지돼야 한다.
b) 품질방침에는 측정 가능한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
c) 품질방침은 조직 내에 적용돼야 한다
d) 해당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에게도 공표돼야 한다.

6.4.2 품질관리자 지정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관리자를 지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6.4.3 사내표준 규정 및 활용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표준(또는 지침서, 업무매뉴얼 등)을 규정하고 활용해야 한다. 사내표준화의 정도는 조직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작자가 반드시 규정해야 할 사내표준은 다음과 같다.

a)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b) 사내표준관리에 관한 사항
c) **품질방침과 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
d) **시정조치, 예방조치** 등의 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e)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
f)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관리에 관한 사항(**4절** 참고)
g) 기반구조에 관한 사항(**5절** 참고)
h)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사항(**6절** 참고)
i) 기타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작자는 사내표준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6.4.4 품질의 평가와 시정조치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품질이 이 표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품질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6.5 고객의 소리와 불만 처리 시스템

6.5.1 고객의 소리 관리

제작자는 고객이 제기한 불편, 불만, 제안, 칭찬 등 고객의 소리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개선에 반영해야 하며, 고객의 소리가 접수되어 처리될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 유·무선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팩스(Fax)**, 구두 등 다양한 접수 경로를 확보하여 고객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b) 접수된 고객의 소리는 유형별로로 분류하고 조치한다.
c) 고객의 소리는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한다.
d) 고객의 소리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내부 종사자와 공유한다.

종사자의 자세, 직무 능력, 전문성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조사 등을 권장한다.

6.5.2 고객의 불만 처리

제작자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개 불만이 접수될 경우 고객불만 처리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처리해야 한다.

a) 불만에 대한 최초 평가는 불만의 심각성, 안전 관계, 복잡성, 영향 그리고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해야 한다.
b) 불만을 조사할 때는 불만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조사해야 한다. 조사 수준은 불만의 중대성, 발생빈도 및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c) 불만에 대한 시정 및 시정조치 등의 대책은 즉시 시스템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d) 불만이 즉시 해결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e) 불만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 또는 결정사항은 즉시 고객과 의사소통해야 한다.
f) 불만에 대하여 취해진 결정사항 또는 조치내용을 고객이 받아들인 경우 이를 수행하고 기록해야 한다. 고객이 제안된 내용을 거절한 경우 불만은 미결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기록으로 관리돼야 하며 조치 가능한 대안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비고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KS Q ISO 10002**를 참고하기 바란다.

부속서 A
(참고)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 점검표

○ 프로젝트(고객)명:
○ 제작 기간:

단계	점검 항목	YES	NO	점검일 (점검자)	확인
상담	고객의 요구 사항과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		
	상담 내용은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과 시스템적으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가?	□	□		
	상담 내용은 문서화되고 고객과 공유하였는가?	□	□		
제안	제안서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제3자 위탁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		
계약	계약서는 고객의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계약서에 첨부되는 자료는 제출기한 내에 확보 가능한가?	□	□		
	제안서에 기술된 제3자 위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 포함)	□	□		
기획	기획회의 계획(일정, 참석자, 목적 등)은 수립되어 있는가?	□	□		
	회의결과는 기록되고 고객에게 보고되고 있는가?	□	□		
	시나리오는 작성되고 고객에게 승인 받았으며 관계자와 공유되고 있는가?	□	□		
	콘티는 작성되고 고객에게 승인 받았으며 관계자와 공유되고 있는가?	□	□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텝이 구성되고 고객에게 보고하였는가?	□	□		
	역할에 따른 출연자는 섭외되고 고객에게 보고하였는가?	□	□		
제작	촬영에 필요한 장소 확보와 세트의 디자인, 제작 등이 촬영 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	□	□		
	제작에 필요한 장비 목록은 작성되고 촬영스텝은 확보되었는가?	□	□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및 근로계약서는 작성・보관되고 있는가?	□	□		
	촬영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가?	□	□		
	초상권은 철저하게 검토되었고 침해되지 않았는가?	□	□		
	안전・보건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였는가?	□	□		
	촬영 본은 고객에게 **제공되고** 승인을 받았는가?	□	□		

단계	점검 항목	YES	NO	점검일 (점검자)	확인
편집 및 시사	편집은 일정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	□		
	가편집 본은 고객에게 승인을 받았는가?	□	□		
	컴퓨터 그래픽은 적정한 시점에 의뢰되고 제작되었는가?	□	□		
	영상후반 작업은 영상 콘텐츠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편집되었는가?	□	□		
	음악은 영상 콘텐츠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작업되었는가?	□	□		
	영상 콘텐츠 제작 전체 프로세스에서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였으며 침해사례는 없는가?	□	□		
	종합편집 본에 대한 영상 콘텐츠 품질을 확인하였는가?	□	□		
	종합편집 본은 고객에게 **시사되고** 승인 받았는가?	□	□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보완하고 품질을 확인하였으며 고객에게 재승인 받았는가?	□	□		
납품 및 사후 관리	고객이 지정한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납품하였는가?	□	□		
	고객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단체표준에 따라 영상 콘텐츠를 납품하였는가?	□	□		
	사후관리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가?	□	□		
	사후관리 내용 계약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납품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실시되고 있는가?	□	□		
경영 · 조직 · 인력 및 교육	경영방침 및 목표는 설정되고 사내에서 공유되고 있는가?	□	□		
	조직별, 개인별 업무분장 및 책임과 권한은 명확한가?	□	□		
	PM, 품질관리자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		
	단체표준에 규정된 교육훈련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	□		
	제3자 위탁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는가?	□	□		
	재무 건전성과 관련 자료는 학보하고 있는가?	□	□		
시설 장비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시설(3자 위탁 포함)은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3자 위탁 포함)는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3자 위탁	제3자 위탁 관련 계약은 체결하였는가?	□	□		
	위탁 관련 자료(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는 확보하였는가?	□	□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였는가?	□	□		

단계	점검 항목	YES	NO	점검일 (점검자)	확인
고객 정보 보호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습득한 고객 관련 정보를 보호하였는가?	□	□		
	정보보호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는가?	□	□		
품질 관리 시스템	단체표준에서 규정한 사내표준을 구비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	□		
	품질관리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	□		
	품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가?	□	□		
고객 소리 · 불만 처리	고개의 소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	□		
	고객의 소리에 대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가?	□	□		
	고객 **불만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		
	미결된 고객 불만은 관리되고 있는가?	□	□		
기타		□	□		
		□	□		
		□	□		
		□	□		

비고 1 점검표는 프로젝트(고객) 별로 점검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일부 항목은 반드시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도 좋다.
비고 2 점검표 **양식과 점검항목**은 기업의 상황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고 3 점검표의 항목을 추가할 경우, 해당 단계 또는 '기타' 란에 추가한다.

부속서 B
(참고)

영상 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

<table>
<tr><td colspan="2">영상 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td><td>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td></tr>
<tr><td rowspan="2">계
약
자</td><td>발주처</td><td></td></tr>
<tr><td>계약상대자</td><td>·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연락처 :</td></tr>
<tr><td rowspan="8">계
약
내
용</td><td>계 약 명</td><td></td></tr>
<tr><td>계약금액</td><td>금 원정(₩)</td></tr>
<tr><td>계약보증금</td><td>금 원정(₩)</td></tr>
<tr><td>지 체상금율</td><td></td></tr>
<tr><td>제작범위 및 내용</td><td></td></tr>
<tr><td>계약기간</td><td></td></tr>
<tr><td>기타사항</td><td></td></tr>
<tr><td></td><td></td></tr>
<tr><td colspan="3">계약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서류: 1. 과업지시서 1부
2.
3.

년 월 일

기관의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td></tr>
</table>

부속서 C
(참고)

영상 콘텐츠 품질평가 점검표

○ 프로젝트(고객)명 :
○ 제작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평가일자:
○ 납품일자:

	평가자	확인
결재		

1. 영상 콘텐츠 품질평가표

항 목	품 질 기 준	결과	판정	특기사항
영상시간	고객요구시간 +5 % 이내			
화면비율	16:9			
해 상 도	가로・세로 해상도 3 840 × 2 160 이상			
영 상	경계 흐림, 선 퍼짐, 색 이상, 플리커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음 질	음이 끊어지거나 청취에 거북할 정도의 잡음 또는 소음이 없어야 한다.			

2. 영상 콘텐츠 내용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특기사항
①시선을 끈다.	□5점 □4점 □3점 □2점 □1점	
②무엇을 표현하려 하는지 명확하다.	□5점 □4점 □3점 □2점 □1점	
③내용이 잘 이해된다.	□5점 □4점 □3점 □2점 □1점	
④독창적이다.	□5점 □4점 □3점 □2점 □1점	
⑤본 영상 콘텐츠를 신뢰한다.	□5점 □4점 □3점 □2점 □1점	
⑥내용과 주제 및 소재가 적합하다.	□5점 □4점 □3점 □2점 □1점	
⑦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5점 □4점 □3점 □2점 □1점	
	총 점 : _____	

비고 1 영상 콘텐츠 품질평가는 전 항목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2 영상 콘텐츠 내용평가는 3명 이상의 업계, 학계, 전문가가 평가하여 산술평균 28점 이상을 합격으로 권장한다.

부속서 D
(참고)

위탁업체 평가 점검표

결재	평가자	확인

○ 업체명(대표자):
○ 주 소:
○ 위탁내용:
○ 위탁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평가항목 및 요구 사항		평가기준 및 배점					점수	비고
		A (10)	B (7)	C (5)	D (2)	E (0)		
경영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면허, 허가, 인증, 자격, 신고, 특허 등 보유[a]	4개 이상	3개	2개	1개	없음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이해도(대표자)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조직의 구성 및 운영[b]	3팀 이상의 전문 조직을 갖추고 원활하게 운영함	A~C 중간 수준	조직을 갖추고 원활하게 운영함	C~E 중간 수준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음		
	프로세스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재무건전성[c]	부채비율 100 % 미만	부채비율 (100~200) %	부채비율 200 % 초과	부채비율 400 % 초과	부채비율 500 % 초과		
수행능력	최근 2년 동안 프로세스 수행 실적	4회 이상	3회	2회	1회	없음		
	위탁 문야 전문인력 보유 현황(비정규직 포함 직접고용 인력)	4명 이상	3명	2명	1명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단체표준 **5.3.2** 적용)	100 % 교육실시	75 %이상 교육실시	50 %이상 교육실시	50 %미만 교육실시	실시하지 않음		
	위탁 분야 시설, 장비(S/W포함) 보유 현황[d]	10 0% 자체보유	A~C 중간 수준	1/2이상 자체보유	100 % 외부의존	-		
	위탁 분야 시설, 장비(S/W포함)의유지 및 관리	점검기준 보유.점검. 기록.관리	점검기준 보유.점검	점검 및 기록	점검	자료 없음		
신인도[e]	최근 3년간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에서의 고객 불만	없음	경미한 불만 1건이하	불만 1건이하	중대한 불만 1건이하	-		
	기타 업계에서의 신인도 등 평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총 점 :		점 (결과 : □ 합격 □ 불합격)						

비고 1 총점 70점 이상의 경우 합격으로 판정[f]
비고 2 사업자 등록증,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면허, 허가, 인증, 신고, 특허,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S/W포함) 보유현황 등 첨부.

[a] 단체표준 인증업체의 경우 면허, 허가, 인증, 신고, 특허 등에 관계없이 A등급으로 평가한다.
[b] 사내표준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평점 보다 1단계 위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c] 신용정보기관(또는 금융기관)의 평가를 우선 적용한다. 부채비율은 외부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로 확인한다.
[d] **시설, 장비, S/W**는 UHD이상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e] 신인도에 대한 평가는 회사 내부의 회의체에서 평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인도의 각 항목은 5점 척도로평가한다.
[f] 만점(100점)에서 70점 이상 득한 경우를 합격으로 권장한다.

위와 같이 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참고문헌

이 표준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 문헌을 참고 하였다.

- KS Q ISO 9000:2015_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 TTAK.KO-07.0082 초고화질(UHD) 디지털 TV 영상 신호(2016.12.27)
- **통합광고효과_송희성·황성연_커뮤니케이션북스**(2016.10.15.)
- **표준국어대사전_국립국어원**
- **TTA정보통신용어사전_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03.09.)
- **영화사전_김광철 외**_MEDIA2.0(2004.09.30)

SPS-S DVCC 0001-7436
해설

이 해설은 이 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제정 취지

영상 콘텐츠는 홍보, 마케팅,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상 콘텐츠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영상 콘텐츠의 품질과 프로세스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아 업체의 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품질수준이 천차만별한 실정이다.

영상 콘텐츠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단체표준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단체표준 개발을 통하여 영상 콘텐츠의 품질기준과 제작단계에서의 일반적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영상 콘텐츠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신뢰 제고로 영상 콘텐츠 제작 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단체표준 인증을 통하여 영상 콘텐츠 품질과 제작자의 품질의식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2 제정 경위

2.1 추진 조직 구성・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단체표준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장비/SW 전문가, 학계 전문가, 표준 전문가, 고객사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2.2 이해관계자 사전 의견수렴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단체표준 제정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 이해관계자 100여 사 중 대다수가 단체표준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체표준 제정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표준이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3 규정요소의 주요내용

3.1 적용범위

이 표준은 UHD 이상으로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 서비스에 요구되는 프로세스, 기반구조,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3.2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세스를 상담, 제안서 작성, 계약, 기획, 제작, 편집, 시사, 납품, 사후관리로 정리하고 각 프로세스 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구 사항과 권고사항, 참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3.3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기반구조

기반구조에서 경영,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설과 장비(S/W 포한)의 확보와 유지, 제3자 위탁 등에 대해서는 UHD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3.4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시스템

안전관리, 환경관리, 고객정보 보호, 품질관리, 고객의 소리와 불만처리(고객만족도 조사 포함) 등은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들 내용을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시스템으로 정하고 각 시스템 별로 법적 요구 사항과 일반적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4 심의 중 특히 이슈가 된 사항

심의 과정에서 주요 이슈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적용범위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와 시스템 수준
영상 콘텐츠 품질평가 방법

이슈에 대한 최종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영상 콘텐츠가 full HD로도 제작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full HD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기술발전이 급속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적용범위를 UHD [TTAK.KO-07.0082 초고화질(UHD) 디지털 TV 영상 신호(2016.12.27)]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구성은 이미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 한국산업표준(KS S 1006 콜센터 서비스및 KS S 1004 시설관리 서비스 등)과 단체표준(SPS-S KECIC-0001-7327 공공전시서비스 등)을 참고하였으며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참고사항은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영상 콘텐츠 품질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표준 및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으나 규정된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업계에서는 원본 파일과 편집 파일의 속성 정보로 UHD 품질수준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동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본체에는 품질평가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고 부속서C에 참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관련 표준이 제정되거나 공인기관에서 품질평가 방법이 개발되면 즉시 검토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속서C에 제시된 영상 콘텐츠 내용 전반에 대한 평가는 AISAS 소비자 구매행동 모델[Attention(주의). Interest(흥미). Search(검색). Action(구매). Share(공유)]을 기반으로 연구된 모델을 참고하였다.

5 부속서에 대한 경위

a)부속서A(참고)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프로세스 체크리스는 본체에서 규정한 프로세스와 기반구조 및 시스템의 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을 분석하여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b) 부속서B(참고)
영상 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는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일반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전문가회의의 논의를 거쳐 제시하였으나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고객의 요구 사항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c) 부속서C(참고)
영상 콘텐츠 품질평가 체크리스는 본체 4.8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본 Dentus Inc.에서 개발한 AISAS 소비자 구매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가 회의에서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d) 부속서D(참고)
위탁업체 평가 체크리스는 본체의 프로세스와 기반구조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위탁업체의 신인도를 추가하여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나 위탁 형태와 범위 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가감하여야 할 것이다.

SPS-S DVCC 0001-7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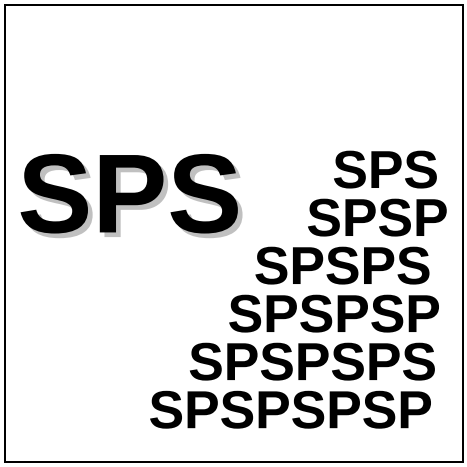

Visual contents production service

ICS 03.080